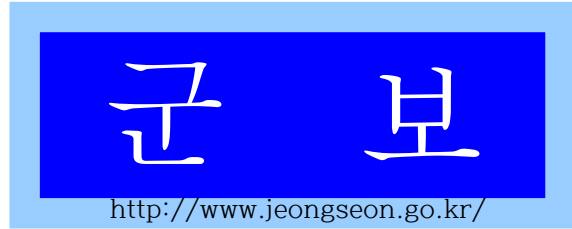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85호 2021. 12. 27. (월)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859호 정선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
- 정선군 조례 제2860호 정선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3
- 정선군 조례 제2861호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7
- 정선군 조례 제2862호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4
- 정선군 조례 제2863호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27
- 정선군 조례 제2864호 정선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38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조 례

제277회 정선군의회(2021. 12. 03.) 및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1. 23.)에서 의결된 정선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59호

정선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200명”을 “18세 이상 주민의 150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
제2조(감사청구의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2조(감사청구의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 ----- ----- 18세 이상 주민의 150명 -----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1.1.12. / 시행 22.1.13.)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 및 청구인 수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안 제1조)
- 나.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연령 및 청구인 수 변경(안 제2조)
(200명 → 18세 이상 주민의 150명)

제277회 정선군의회(2021. 12. 03.) 및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2. 24.)에서 의결된 정선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60호

정선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및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자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

용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
4. 성별, 연령,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한다.

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사업)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2. 건강 검진 등 의료 지원
3.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다양한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8.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10.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서비스
11.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12.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및 기관과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적용 범위(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6조)
- 마. 실태조사 및 지원 대상(안 제7조 및 제8조)
- 바. 지원사업(안 제9조)
- 사.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제277회 정선군의회(2021. 12. 03.) 및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1. 23.)에서 의결된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61호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케이블카”란 공중에 매달린 밧줄에 차체를 설치한 운송수단을 말한다.
2. “케이블카 시설”이란 케이블카, 대피소, 데크로드, 가리왕산 역사관과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 일괄 승차권을 구매하는 집단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케이블카 시설물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5. “수탁자”란 케이블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가리왕산 케이블카 시설의 운영)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가리왕산에 가리왕산 케이블카 시설을 운영한다.

제4조(운행구간) 케이블카의 운행구간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승차인원) 케이블카 1대당 승차정원은 8명으로 한다. 이 경우 승차인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승객
 - 가. 만 12세 초과인 경우: 1명
 - 나. 만 12세 이하인 경우: 0.5명
2. 화물: 무게 65킬로그램마다 1명

제6조(운행시간 등) ① 케이블카의 운행시간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카의 운행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운행시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케이블카 이용자의 수가 급변하는 경우
3. 기상악화 등으로 운행의 단축 또는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케이블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휴일) ① 케이블카 시설의 정기휴일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로 한다. 다만, 정기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정기휴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임시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기상악화, 재난발생 등의 사유로 케이블카 운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케이블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 케이블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빈, 외국인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 또는 케이블카 관리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정선군민(케이블카 시범운영기간으로 한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무료탑승권의 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카 무료탑승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연간 무료탑승권의 발행 총수는 전년도 유료탑승객 수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1. 케이블카 이용 홍보에 필요한 경우
2. 관내 소외계층 등 지역사회 기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무료탑승권 발행 및 사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이용료의 할인) 군수는 케이블카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에 따른 할인이용료를 적용한다. 이 경우 할인이용료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그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정선군민
2. 정선군 자매도시 주민
3.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5. 65세 이상인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사고위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케이블카의 정상운행이 어려운 경우
2.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탑승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당일 영업시간 내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의 사정이 아닌 사유로 케이블카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안전기준 및 운영기준) 군수는 운행구간의 역마다 케이블카 시설의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을 비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케이블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자연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흡연,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케이블카 이용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위
3. 금지구역 안의 주차행위
4. 허가 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15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케이블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지나친 음주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유해한 물품을 지닌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
5. 장애인 안내견 외에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6. 케이블카 시설 운영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7. 그 밖에 시설물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6조(손해배상)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케이블카 및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관리자는 그 부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게시사항) 군수는 케이블카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제14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

3. 이용 요금표
4. 운행시간
5. 승차 정원
6.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이용제한 및 손해배상 의무
7. 이용약관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위탁) 군수는 케이블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케이블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기간 등) 케이블카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하로 하며, 위탁의 방법과 계약 및 갱신 등의 절차와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0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보험가입) 군수는 케이블카 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① 케이블카 이용료를 제외한 시설이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케이블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14.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관리

[별표 1]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행구간

운행구분	기점	경유	종점
왕복	숙암역	가리왕산역	숙암역

[별표 2]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이용료

1. 일반요금

구 분	이용료(원)	
	개인	단체(20명 이상)
가. 대인(1명)	10,000	9,000
나. 소인(1명)	6,000	5,000

※ 비고

- 위 표에 따른 요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대인 이용료: 만 13세 이상인 사람
 - 소인 이용료: 만 13세 미만인 사람. 다만, 보호자가 동반한 만 3세 미만의 영아에 대하여는 보호자 1명 당 영아 1명의 이용료를 면제한다.
- 케이블카 이용료는 왕복 이용료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이용자가 편도구간만 탑승하였더라도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2. 할인요금

구 분		이용료(원)
가. 정선군민 및 정선군 자매도시 주민	1) 대인(1명)	5,000원
	2) 소인(1명)	3,000원
나. 장애인(1명)	1) 대인(1명)	5,000원
	2) 소인(1명)	3,000원
다. 국가유공자 등(1명)		5,000원
라. 65세 이상인 사람(1명)		5,000원

※ 비고

- 위 표 가목에서 정선군 자매도시 주민이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위 표 나목에서 장애인 할인요금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제안이유

정부의 곤돌라 한시적 운영 결정에 따라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케이블카 운행구간, 승차기준, 운행시간(안 제3조 ~ 안 제7조)

다. 케이블카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2조)

라. 케이블카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제한(안 제13조 ~ 안 제17조)

마. 케이블카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안 제19조)

바. 케이블카 예산 지원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안 제22조)

제277회 정선군의회(2021. 12. 03.) 및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1. 23.)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62호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 설치되는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을 “따라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을 설치하고 그” 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정선군지역자율방재단” 을 “방재단”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00명 이내” 를 “300명 이하” 로, “있으며,” 를 “있으며, 방재단에” 로, “자는” 을 “사람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단,” 을 “다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0~ 30명 으” 를 “20명 이상 30명 이하” 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방재단장” 을 “단장” 으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역자율방재단” 을 “방재단”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 를 “사람” 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를 “다음 각 호와”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율방재단” 을 “방재단” 으로 한다.

제9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재난 현장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 단서 중 “단” 을 “다만” 으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3조제4항 단서 중 “단” 을 “다만” 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제2-1호, 제3호,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따라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을 설치하고 그 -- ----- ---
제4조(조직) ① (생략)	제4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정선군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의거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② 방재단-----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단원수는 300명이내로 하며,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 ----- 300명 이하----- ----- ----- 있으며, 방재단에 ----- 사람은 ----- -----.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⑤ ----- -----

현행	개정안
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 ---. <u>다만</u> , ----- ----- ----- --.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u>20~ 30명</u> 으로 한다.	⑥ ----- ----- ----- <u>20명 이상 30명 이하</u> ----- -----.
⑦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정선군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u>방재단장</u> 의 지휘에 따른다.	⑦ ----- ----- <u>단장</u> ----- -----.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제6조(해임)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기타</u>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u>그 밖에</u> ----- -----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u>지역자율방재단</u> 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운영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u>방재단</u> ----- ----- ----- -----.

현행	개정안
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 ⑥ (생략) 제8조(방재단의 임무) ① (생략)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u>자율방재단</u>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 10. (생략) ③·④ (생략) 제9조(소집) ①·② (생략) ③ 삭제 <u><신설></u> <u><신설></u>	② ----- ----- ----- - 사람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방재단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u>다음 각 호와</u> -----. 1. <u>방재단</u>----- ----- 2. ~ 10.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소집) ①·②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재난 현장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 직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를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0조(운영 등) ① ~ ③ (생략)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정선군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 ⑪ (생략)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u>기타</u>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u>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u> <u>⑥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u> 제10조(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11조(금지행위)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u> -----

현행	개정안
행위 제13조(교육) ① (생략) ②·③ 삭제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 제13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④ ----- -----. <u>다만</u>----- -----.

[별지 제2호서식]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성 명	○○○(성별)	연 령		혈 액 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	남 ○○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2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별지 제3호서식]

활 동 확 인 서

성 명	(인)	등록번호	※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장 소	※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명 (인)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7호 서식]

요양(), 장해(), 장제(), 유족()재해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 3. 구급 【 】 4. 기타 【 】		
요양 및 요양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a/㎡(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임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 임금계좌확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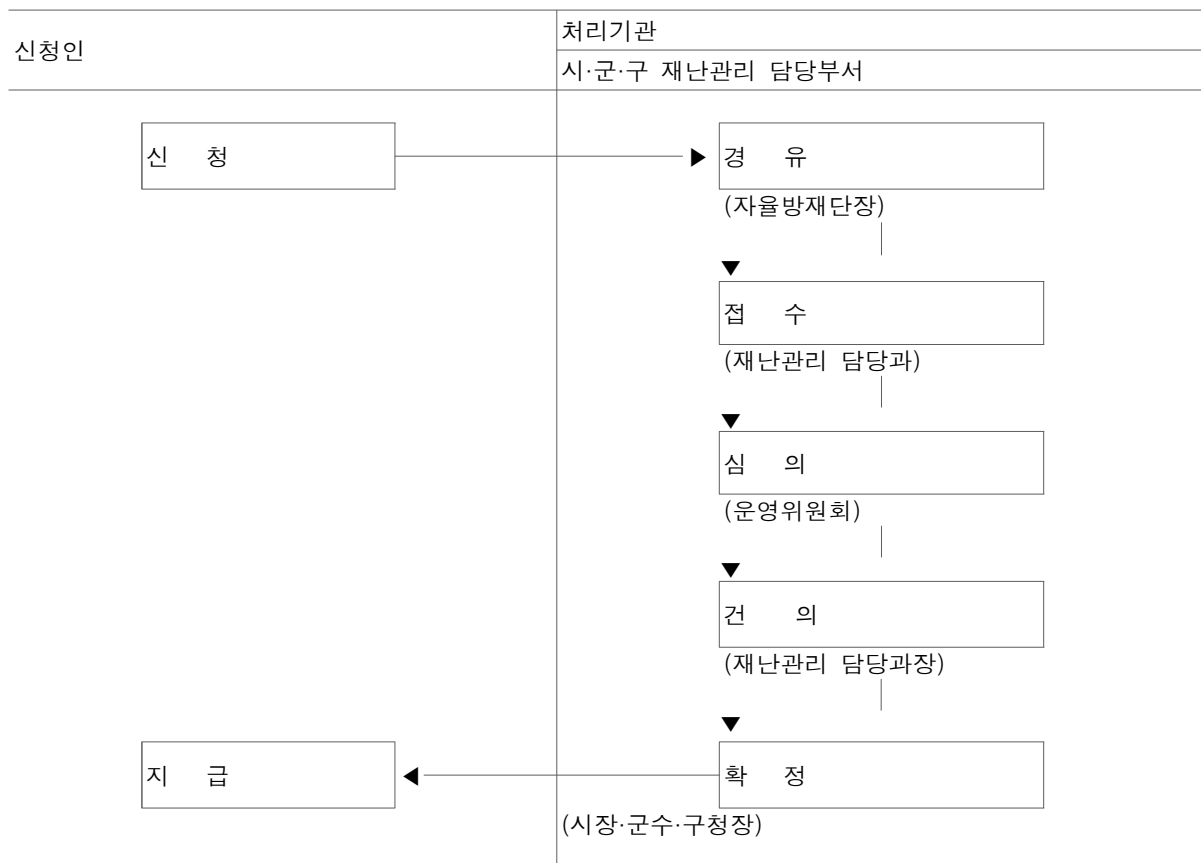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소집수당 지급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제4항~제6항)

나. 조례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제277회 정선군의회(2021. 12. 03.) 및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1. 23.)에서 의결된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63호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바목 중 “관광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 및 생활형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16층 이상이거나 300세대”를 “15층 이상이거나 100세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④ 강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⑤ 위원회 심의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용도지역·지구 및 토지이용계획과의 적정성
2. 도시기반시설과의 관계
3.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심의사항에서 제외한다.
4.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5.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 및 형태의 합리성
6. 건축구조의 적정성
7. 조경·공개공지 등 도시환경과의 적정성
8. 건축설비의 합리성 및 안정성
9. 방재계획의 합리성
10. 토지 굴착의 적정성

제8조제1항 중 “150명”을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에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해 등 재해의 예방 및 복구공사
2. 가설시설물, 크레인 등 철거 및 복구공사

제2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고 군 내에 사무소를 소재한”을 “「강원도 건축 조례」 제29조에 따라 공개모집된 명부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한다”를 “하며,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1. 법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전 현장조사업무

제23조제3항제2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나. 제2항제4호의 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수시점검의”를 “구조안전, 화재안전에 따른 긴급점검의”로, “수시점검을”을 “긴급점검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시점검”을 “긴급점검”으로, “그”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그”로, “소유자나 관리자”를 “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시점검”을 “긴급점검”으로,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를 “관리자는 지정을 통지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의 관리자와”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건축물로 하고, 검사 주기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며, 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

를 말한다)마다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은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27조에 따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 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기능)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 ----- -----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숙박시설 중 <u>관광숙박시설</u>	바. ----- <u>관광숙박시설</u> <u>및 생활형숙박시설</u>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삭 제>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u>16층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u>	4.----- ----- <u>15층 이상이거나 100세대</u>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u>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u>회 심의를 생략한다.</u> <u>④ 강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u> <u>⑤ 위원회 심의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용도지역·지구 및 토지이용계획과의 적정성</u> <u>2. 도시기반시설과의 관계</u> <u>3.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심의사항에서 제외한다.</u> <u>4.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u> <u>5.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 및 형태의 합리성</u> <u>6. 건축구조의 적정성</u> <u>7. 조경·공개공지 등 도시환경과의 적정성</u> <u>8. 건축설비의 합리성 및 안정성</u> <u>9. 방재계획의 합리성</u> <u>10. 토지 굴착의 적정성</u>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제8조(구성) ① -----

현행	개정안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u>15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u><신설></u>	----- 50명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에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제17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 ----- ----- ----- ----- -----.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건축물은 제

현행	개정안
② (생략) <u><신설></u>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u>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업무</u> 2. ~ 5. (생략) ③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대행자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조사업무 대행자(이하 “업	<u>외한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u>수해 등 재해의 예방 및 복구공사</u> 2. <u>가설시설물, 크레인 등 철거 및 복구공사</u>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u>법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전 현장조사업무</u> 2. ~ 5. (현행과 같음) ③ ----- ----- -----. 1. -----

현행	개정안
무대행자”라 한다)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하고 군 내에 사무소를 소재한 건축사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원도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3. ~ 6. (생략) 제2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강원도 건축 조례」 제29조에 따라 공개 모집된 명부의 ----- -----. 2. ----- ----- ----- ----- ----- 하며,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나. 제2항제4호의 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3. ~ 6. (현행과 같음) 제2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

현행	개정안
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2. (생략)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u>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u>에 대하여는 <u>수시점검을</u>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u>수시점검 대상</u>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의 <u>소유자나 관리자</u>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u>수시점검 대상</u>으로 지정, 통보받은 건축물의 <u>소유자나 관리자</u>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 1. 2. (현행과 같음)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 ----- - <u>구조안전, 화재안전에 따른 긴급점검의</u> ----- <u>긴급점검을</u> -----. ③ ----- <u>긴급점검</u> ----- ----- <u>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그</u> ----- <u>관리자</u>-----. ④ ----- <u>긴급점검</u> ----- ----- <u>관리자는</u> <u>지정을 통지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의 관리자와</u> ---. <u>제25조의2(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건축물로 하고, 검사 주기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며, 검사를 실시한</u>

현행	개정안
제28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제26조에 따른 대지 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 이상 심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는 낙엽수는 6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한다. ③ 기존수목(원시림을 포함한다)을 그대로 둘 경우에는 해당 면적의 2배까지 인정한다. 제3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②(생략) ③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로 하고, 단서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3회로 한다.	<u>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은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u> 제28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27조에 따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제3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②(현행과 같음)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 제안이유

현행 「정선군 건축 조례」 상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개정 및 정부합동 평가 대비 자치법규 정비,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된 사항 등을 개선·보완하여 자치법규의 차별규제 개선 및 지역주민의 편익 도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건축위원회 심의 및 운영 기준 구체화(안 제7조)
- 나. 건축위원회 구성 인원의 현실화(안 제8조)
- 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대상 기준 명시(안 제17조)
- 라. 자치법규의 차별규제의 개선(안 제23조)
- 마.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상위 근거 법령 수정(안 제25조)
- 바. 실내 건축의 적정성 검사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25조의2)
- 사. 대지 안의 조경기준의 명확화(안 제28조)
- 아.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에 대한 명시(안 제38조)

제277회 정선군의회(2021. 12. 03.) 및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2. 24.)에서 의결된 정선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64호

정선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농촌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을 활성화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 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 또는 참여하는 사람(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농촌인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안정적으로 농촌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선군 농촌인력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5.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촌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관련 구인·구직 등록 및 농작업 참여자의 알선·연계
 2.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촌인력의 지원 및 관리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① 군수는 농업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이 제5조제2항 각 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2. 농작업 안전물품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인력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다. 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라.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마. 농촌인력지원센터의 관리·운영 및 지원(안 제6조 및 제7조)